

포상금보다는 실비적 성격이며, 또한 포상금액의 한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결과 2001년도 결손처분한 체납시세의 징수실적은 대상금액 4,808억 원 중 0.4%인 1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민간전문가인 비전임계약직 채용과 그 문제점

- 현행법상 체납시세 징수와 체납자 조사 등 조세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공무원 총정원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계약직의 기본급 50%로 하고 성과에 따라 실적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실적에 따라 한계 없이 성과금을 지급하므로 체납액 징수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비전임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이 아닌 업연히 공무원으로 실적에 따라 한계 없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관계공무원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조세징수와 관련된 법률개정을 통하여 체납시세를 민간채권 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찬반표결 (찬성8, 반대2)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민간전문가를 비전임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98
----------	----

2002년 12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 12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이철수)

가. 제안이유

- 정기 재물조사결과 불용품 중 활용가능품의 소요조회를 자체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주요내용

가.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나.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조달청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4항)

검토요지

- 물품 소요조회는 불용되는 물품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물품 불용 기관과 수요기관과의 사이에 물품 소요조회의 활용성이 매우 낮고, 공문을 통한 물품소요 조회시 평균 138개 기관에 대하여 공문작성, 배포, 접수 및 열람 등으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있으며, 물품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만 실시하여 민간 공익기관에서 정보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용품 중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도록 하고(개정안 제16조제1항)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개정안 제16조제4항)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적·별정적 및 고용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액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의 순징수액이라 함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3조의2”로 하고, 제3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호 각호”를 “제3조 및 제3조의2”로 한다